

『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5월 26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5월 26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6월 7일

제2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지원국장 이창형

나. 제안이유

-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(과기부 고시 제2020-40호, 2020.8.27.)
-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강소특구 지원사업 및 조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- 기술핵심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강소특구 지원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4조)
- 수혜자의 의무 및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,
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,
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변 상 용

- 본 조례안은 구미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지정(과기부 고시 제 2020-40호, 2020.8.27.)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써,
-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성과 및 유망기술의 사업화,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,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,

○ 향후 대학, 연구소, 기업 등 지원 수혜기관의 지역 재투자 및 환원 등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